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845호
- 다. 제출일자 : 2001. 4. 6.
- 라. 회부일자 : 2001. 4. 9.

2. 제안사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98.12.31)되어 단속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우리시 지침  
으로 정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모자·모자·  
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  
임.

3. 주요골자

- 가. 제복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모자, 신발
  - (2)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 모자, 완장, 신발(신발은 주차단속을 전담  
하는 공무원만 착용)
- 나. 제복의 계절별 착용기간을 규정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기간  
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착용기간
  - 하 계 : 6월 10일 ~ 8월 31일
  - 동 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춘추계 : 4월 1일 ~ 6월 9일, 9월 1일 ~  
10월 31일
- 라.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  
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규정된 완장을 착  
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  
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현 주·정차단속공무원 현황

- 가. 주차단속원 현황
  - 주차단속원 현황

(2000. 12. 31)

계	여자단속원 (기능직지방조무원)	남 자 단 속 원		
		소 계	기능직	고용직
674	591	83	5	78

나. 주차단속원 임용경위

- '89. 6월 : 올림픽이후 차량급증에 따라  
시직원의 주차위반 계도
- '90. 8월 :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에게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90. 9월 : 여성주차단속원 최초 공개모집  
임용
  - ※결원보충시 및 '96~'97 방법원 직종변  
경시 고용직 임용
- '90.11월 : 구청장에게 단속권 부여('90.  
10월 시행령개정)

다. 제복착용 현황

- '90. 11 최초로 우리시에서 주차단속업무  
시행시 제작한 여성주차단속원 제복은 그  
간 재질이나 제복종류의 일부변경을 제외  
하고는 디자인, 색상 등의 수정을 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  
숙하고 식별이 용이함.
- 자치구 여자단속원(기능직 지방조무원)의  
경우 우리시 지침에 의거 통일된 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 여자단속원 외의 경우는 통일된 제복이  
없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추어 제복착용  
또는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고 단속업무  
를 수행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4.6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45호로 2001.4.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제1조(목적), 제2조(착용수칙), 제3조(제복의 종류), 제4조(착용구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지급기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그 동안 우리시의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차단속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근거 및 만드는 방법 등을 통일하고 이를 착용함으로써 단속공무원으로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등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복의 소재 및 재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복제작시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복으로 인한 불평 불만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자치구간의 제복에 대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공무원의 경우
  -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 나.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 다. 신 발(부츠 포함)
  - 라. 장 구 : 혁대 및 견식
  - 마. 부속물 : 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 가.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 나. 완 장
  - 다. 신 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계 : 6월 10일 ~ 8월 31일
2. 동 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6월 9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